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전기안전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·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전기안전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72호, 2025. 5. 27. 공포, 2025. 11. 28. 시행)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법률에서 규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이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신고 의무 대상을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시설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 등 13종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규정(안 제10조의2)
- 나. 책임보험의 종류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정하고, 보상한도액, 가입·재가입 시기를 규정(안 제10조의3)
- 다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만원, 책임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규정(별표 5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변경 신고의 대상) 법 제21조의2 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(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)가 50개 이상인 시설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종교시설
2. 노유자시설
3. 수련시설
4. 공장
5. 창고시설
6.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
7.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8. 자원순환 관련 시설
9. 교정시설

10. 국방·군사시설

11. 묘지 관련 시설

12. 장례시설

13. 야영장 시설

제10조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보험의 종류 등)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(이하 “책임 보험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.

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어야 한다.

1.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: 피해자 1명당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

2. 재산상 손해의 경우: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

③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책임 보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.

1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까지

2. 책임보험의 만료일까지

별표 5 제2호 바목부터 서목까지를 아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2항제3의2호	50만원
사. 법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 제1항제2의2호	200만원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2(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변경 신고의 대상)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(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)가 50개 이상인 시설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.</u> <u>1. 종교시설</u> <u>2. 노유자시설</u> <u>3. 수련시설</u> <u>4. 공장</u> <u>5. 창고시설</u> <u>6.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</u> <u>7.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</u> <u>8. 자원순환 관련 시설</u> <u>9. 교정시설</u> <u>10. 국방·군사시설</u> <u>11. 묘지 관련 시설</u>

<신 설>

12. 장례시설

13. 야영장 시설

제10조의3(보험의 종류 등)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(이하 “책임보험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.

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이어야 한다.

1.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: 피해자 1명당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

2. 재산상 손해의 경우: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

③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책임보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가입하

거나 재가입해야 한다.

1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
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전기
를 공급받기 전까지
2. 책임보험의 만료일까지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984